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

2016. 9.

(주)한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

금지되는 행위
● 부정청탁 행위 금지
● 직무와 무관한 후원성 금품이라도 100 만원(1 분기 300 만원) 이상 수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없는 금품 100 만원 이하 수수시, 2~5 배의 과태료 부과, 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처벌
● 직무와 관련한 금품은 음식물 3 만원, 선물 5 만원, 부조금 10 만원 이외에는 허용되는 않는다.

▣ 법의 특징

- ◎ 모든 공직자와 배우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 ◎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 행위도 그 제재의 대상
- ◎ 법 위반시 공직자에 대한 필요적 징계사유

▣ 적용 대상자

- ◎ 공직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시용근로자 등 형태를 불문)
- ◎ 위 공직자의 배우자
- ◎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 법제 11 조

- ◇ 행정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 공무상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감리원의 공직자 의제

◎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 84 조

- ◇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 의제

- ◇ 건설기술진흥법 제 39 조 제 2 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5 항에 의한 고시) 제 11 조 제 1 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동 지침 제 2 조 제 5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 26 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 ◇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 8 호)
-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감리원은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게(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또는 개인) 되는 것이어서 당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이 법상 공직자에 포함 - 법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

■ 부정청탁 금지 - 법제 5 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한 부정청탁(공직자의 아래 직무에 대하여 법령(조례, 규칙, 고시, 훈령, 내부규정, 기준 등 포함)을 위반하거나,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직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인가, 허가, 면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등에 관한 직무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와 관련한 직무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 채용, 승진, 전부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직무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각종 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위원, 시험, 선발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선정 및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행위

- ◎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나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탈락하게 하는 행위
- ◎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의 배정, 지원, 투자, 출연, 출자와 관련한 직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금액으로 매각,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과 관련하여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배제되도록 하거나 조작하게 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법제 5 조 제 2 항

- ◇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한 확인, 문의 등
- ◇ 질의, 상담 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청탁의 동기, 목적, 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청탁의 수단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사항 - 법제 7 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그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그 공직자의 해당 직무참여를 정지시키거나 전보시킬 수 있다.

■ 부정청탁 위반시 제재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결재선상에 있는 상관,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 22 조 제 2 항
 - ◎ 부정청탁을 한자: 1 천만원~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정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 법제 22 조 제 1~3 항
-

■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 법제 8 조

- ◎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어떤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 회로 봄)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직무와 무관한 금품이라도 100 만원 이상은 받지 마라). - 법제 8 조 제 1 항
- ◎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아니된다(직무와 관련된 금품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푼도 받으면 안된다. 대가성있으면 뇌물죄). - 법제 8 조 제 2 항

-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법제 8 조 제 4 항
- ◎ 공직자가 위 금품을 받거나 또는 배우자가 위 금품을 받은 것을 안 경우, 공직자는 이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법제 9 조
- ◎ 1 회 100 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의 금품등(후원성 금품)을 받은(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한 경우도 동일) 공직자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 만원 이하의 금품등(직무성 금품)을 받으면 금품액의 2~5 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법제 23 조 제 5 항
- ◎ 위 벌칙조항 및 과태료 조항은 양벌규정(법인도 처벌) - 법제 24 조
- ◎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 - 법제 13 조
- ◎ 신고자에게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법제 15 조 제 5~6 항

▣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 법제 8 조 제 3 항

-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시행령 6조관련 별표 1
 -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모바일 상품권 포함)
 -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경조사의 범위: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사망)
 -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액은 5만원 상한
 - ◇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상한
(이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각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공개적이어야 하고 초청장, 초청공문이 있어야 함)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어야 함) 등이나 경연, 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수수의 동기, 목적, 시기, 당사자의 관계, 청탁과 결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상식선에서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사항 - 법제 9조

공직자 자신이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수수한 금품을 즉시 반환하고 신고하면 징계 제외).

소속기관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 금품등의 정의

-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 수수와 관련한 주의사항

- ◎ 100 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3,000 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뇌물공여 적발시 회사는 최대 2 년간 입찰참가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 100 원 이하 금액에 대한 뇌물죄 판례

- ◎ 군(郡)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 등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 일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하금 명목으로 금 500,000 원을 교부받은 사안(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 262 판결)

◎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경우, 비록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 1499 판결)

◎ 비록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금 200,000 원으로써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위 금품 수수가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의해서 수수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 865 판결)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제재없음
	● 공직자에게 제 3 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 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인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p>금품등 수수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무관한 금품을 1 회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하여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의 금품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을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자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몰수, 추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하여 1 회 100 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의 금품 수수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을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자 	<p>수수금액의 2~5 배 이하의 과태료</p>

Q & A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모 군청에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형질변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같은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인 A 를 통해 형질변경 허가 담당자인 B 에게 청탁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A: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직무는 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므로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 B 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 천만원 이하, A 는 과태료 3 천만원 이하, 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1 천만원 이하

Q: 모 용역과 관련하여 담당 사무관인 B 와 친분이 있는 모 용역회사 임원 C 를 통하여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 는 C 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 법에 저촉되나?

A: 입찰정보 비밀을 알려달라는 청탁금지. 청탁한자(1,000 만원)와 청탁자를 대신하여 부탁한 모 용역회사 임원 C(2,000 만원) 모두 과태료 처분. 부탁을 거절한 사무관 B 는 아무런 불이익 없음

Q: 모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에서 별점 3 점을 주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발주청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별점을 1 점으로 감점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이 법에 저촉되나?

A: 별점을 감점처분 받는 것은 행정처분의 감경에 해당하므로 발주청 담당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탁한자는 과태료 처분

Q: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A: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5 만원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를 받아 5~10 만원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법 위반인지?

A: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고 단순히 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도 법 위반인지?

A: 공직자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 뿐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 만으로도 법 위반이 됨

Q: 공직자가 경조비로 15 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5 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방문시 가벼운 음료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 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을 제공한 자는 법 위반인지?

A: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임

Q: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A: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는 이 법에 의해 처벌되고, 배우자는 변호사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법 위반인가?

A: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

Q: 선물에 대한 1 인당 제한금액인 5 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판매 정가를 기준으로 하나?

A: 영수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면 실제 금액이 기준이 되고, 영수증이 없다면 판매정가가 기준이 되며, 실제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시가가 기준이 된다.

Q: 공직자에게 5 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전통시장, 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원할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의 목적으로 5 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줄 수 있음. 다만 사고,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직무와 관련있는 모 공단 B 과장과 식사를 하면서 본인은 4 만원짜리 B 과장은 2 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4 만원짜리 선물을 하였다. 이 법에 저촉되나?

A: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한도는 5 만원이므로 법 위반 대상임

Q: 식사를 하면서 안주를 시켜 술을 같이 마셔 각자의 정확한 식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고 음료수와 주류대도 합산되나?

A: 안주를 시켜 같이 먹는 것과 같이 각자의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균등하게 분할하며(1/n), 음료수나 주류대도 함께 합산한다.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 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4 만원의 식사 접대를 하고 1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A: 이 경우 음식물은 3 만원, 선물은 5 만원 각 가액기준 이내이어야 하므로 음식물이 3 만원 기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임

Q: 공직자에게 3 만원의 식사를 사주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6 천원자리 커피를 더 사준 경우?

A: 식사와 커피를 마신 것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 회로 보아야 하므로 음식물 기준 3 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임

Q: 직무와 관련있는 모공단 A 국장의 부친상에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부조금을 10 만원 주는 외에 A 국장과 아는 다른 임원들도 각자 10 만원 이내의 부조금을 주는 것은 허용되는지?

A: 부조금의 출처가 회사라면 법인인 회사도 1 인으로 보아 1 인당 부조금액 한도인 10 만원을 넘으면 안되므로 대표이사 외에 다른 임원들이 회사 돈으로 부조금을 내는 것은 법 위반임

이상